

기획위원회규정

제정 1998. 4. 1.
 개정 2002. 4. 15.
 개정 2006. 6
 개정 2012. 3. 1.
 개정 2016. 3. 1.
 개정 2017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획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
2. (삭제 2006.6.)
3. 학교발전을 위한 장·단기발전계획, 교육·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4.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에는 총장, 행정부서장, 스쿨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시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③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실 소속 직원 중 1인이 된다.

④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제2조의 기능수행을 위한 사안 발생 시 총장은 위원회 운영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위촉한다. 다만, 사안의 경증을 고려하여 그 내용이 경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①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전문위원 및 자문위원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의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제7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(신설)

제8조(비밀유지) 위원, 전문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(신설)

제9조(기타) 본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